

대설 피해 중소기업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융자)』 지원사업

[문의 : 안성시청 첨단산업과 ☎ 678-2463]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재해(대설 등)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에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융자)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 및 피해 복구 지원
- 추진기관: 경기도(주관), 경기신용보증재단(사업수행)
- 지원대상: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 일부 업종 지원 제외대상(붙임 2 참조)
 - ※ 확인증(또는 확인서) 상 피해금액 명확히 기재
- 지원내용
 - 융자한도: 최대 5억 원(피해금액 범위 내 / 부동산, 신용 등 담보 제공시)
※ 담보가 없는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재해 특례보증서” 발급을 통해 피해금액 범위 내 최대 3억 원까지 융자 가능
 - 융자금리: 은행금리 - 이차보전(1.5% 지원)
 - 융자기간: 4년(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신청절차: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제출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비스(g-money.gg.go.kr)로 온라인 자금신청 → 경기 신용보증재단 안성지점 방문 · 상담 및 심사 → 대출 은행 방문 및 대출 실행
- 신청기한: 확인증(또는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신청절차(세부)

- ①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제출 및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피해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2024년) 제출
 - 제출 · 발급처: 사업장 소재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안성시청 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

②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비스 온라인 자금신청 (g-money.gg.go.kr)

- 사업자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회원가입 후 신청

③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성지점 방문 · 상담 및 심사

-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재해 특례보증서 등 상담 및 심사

④ 은행 대출 실행 (협약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 은행)

□ 구비서류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제출 및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시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붙임 1 참조), 피해 사진,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2024년)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비스 온라인 자금신청 시

- 신청서 1부(온라인 입력)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연도 부가세신고서 각 1부
-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1부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유의사항

○ 경기신용보증재단 심사결과 지원요건 저촉 시 용자 신청 금액 대비 감액 또는 불가할 수 있으며,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요건 저촉사항: 가압류, 국세 · 지방세 체납, 파산, 연체 등

□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성지점 [☎ 031-690-4133 또는 4141]

○ 안성시청 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 [☎ 031-678-2463]

붙임 1.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1부

2.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외 업종 1부. 끝.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1. 19.>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활용 동의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1. 피해자 정보

주소(사업장)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				
가족 수	명(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				
고등학생 수	()고등학교 ()고등학교 명 명				
재난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이동전화	- -	통신사명 []KT []LGU+ []기타	가입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가입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2. 피해 내용

※ 피해시설명부터 피해 원인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발생 위치					
피해시설명	(1)	(2)	(3)	(4)	(5)
총면적(소유 + 임차)	(1) <i>m²</i>	(2)	(3)	(4)	(5)
면허·허가·등록 번호	(1)	(2)	(3)	(4)	(5)
피해 물량	신고	(1) 금액 작성	(2)	(3)	(4)
	확정	(1)	(2)	(3)	(5)
피해 구분	(1) 파손, 붕괴 등	(2)	(3)	(4)	(5)
피해 원인	(1) 대설 등	(2)	(3)	(4)	(5)
간접지원	융자신청 여부	[]	[]	[]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 또는 대부 여부	[]	[]	[]	[]
피해 발생 위치					
피해시설명	(6)	(7)	(8)	(9)	(10)
총면적(소유 + 임차)	(6)	(7)	(8)	(9)	(10)
면허·허가·등록 번호	(6)	(7)	(8)	(9)	(10)
피해 물량	신고	(6)	(7)	(8)	(9)
	확정	(6)	(7)	(8)	(10)
피해 구분	(6)	(7)	(8)	(9)	(10)
피해 원인	(6)	(7)	(8)	(9)	(10)
간접지원	융자신청 여부	[]	[]	[]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 또는 대부 여부	[]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3. 간접 지원

※ 간접지원 항목별 지원 여부는 간접지원 실시기관별 확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도시가스 사용 여부	예 [] , 아니오 []	가입자명:	생년월일:
자동차 소유 여부	예 [] , 아니오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공공주택 임대 신청 희망 여부	예 [] , 아니오 []	※ 「재난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위기가족 긴급지원 희망 여부	예 [] , 아니오 []	※ 가족돌봄, 가족의 심리·정서 지원 등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예 [] , 아니오 []		
과태료 징수 유예 희망 여부	예 [] , 아니오 []	※ 현재 부과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재해손실 공제 신청 희망 여부	예 [] , 아니오 []	※ 자연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4. 확인 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예 [] , 아니오 []	내용:
다른 시·군·구에 동일한 피해신고를 했는지 여부	예 [] , 아니오 []	내용: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여부	예 [] , 아니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의사 유무 ※ 좌측항목 '아니오' 선택 시 예 [] , 아니오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 가족 [] 이장·통장 [] 이웃 []

안 성 시 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2. 소득금액 증명 3. 가족관계증명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재난지원금은 위의 신고 내용을 기초로 담당 공무원이 주생계수단 등을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2.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 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주생계수단 및 각종 지원혜택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응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9조의2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접수 여부 등을 알리기 위한 자료로 행정안전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피해신고서 접수 여부 등의 알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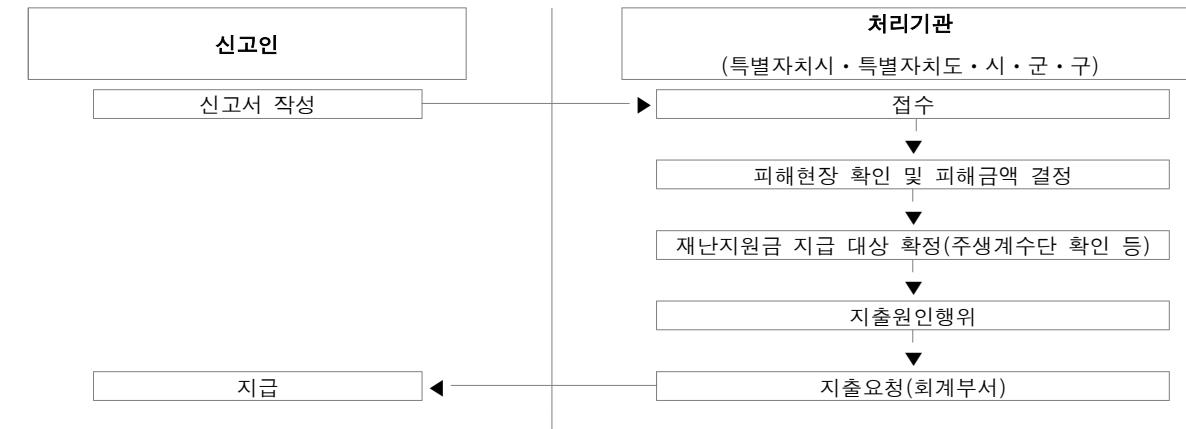
피해자

(서명 또는 인)

작성 및 제출 방법

1. []에는 해당 사항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를 정확히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매몰 · 침수 · 소파 · 반파 · 전파 · 유실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청, 읍 ·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불 임 2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외 업종

업 종	분류코드	해 당 업 종
축산업	01299中	개식용 사육업
제조업	10111中	개식용 도축업
	3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41	종합건설업 (단, 아래 업종 및 대상은 지원가능) -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대상
건설업	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7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5中	개식용 도매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13中	개고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7中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12中	개고기 소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2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음식점업	561中	개고기 음식점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홍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과,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홍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76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보건업	86	보건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